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73-224  
<https://doi.org/10.29212/mh.2021..120.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실태

문광균\*

1. 머리말
2. 안흥진 연혁과 안흥첨사의 위상 변화
3. 안흥첨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4. 맺음말

## 1. 머리말

지방통치의 중요성은 고금을 막론하고 간과된 적이 없다. 조선시대 지방통치는 각 도의 관찰사를 중심으로 군현의 수령이 담당하였다.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으로 분류되는 목민관은 수령칠사라는 본원적 임무를 부여받아 백성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전국을 팔도로 나누어 각 도의 최고통치자를 파견한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관찰사제와 군현제는 중앙의 통치구조와 연계되어 조선왕조의 지배 질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통치체제 아래 조선왕조는 500년이 넘도록 존속하였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 지방통치는 많은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었고, 그 결과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관찰사제의 성립과정과 지방관의 통치행정과 업무 기능 등 기본적인 지방통치체도를 밝힌 연구<sup>1)</sup>를 비롯하여 향촌사회의 내부 지배구조의 변화<sup>2)</sup>와 이서들의 존재 형태 등을 밝힌 굵직한 연구<sup>3)</sup>들이 선행되었다. 또한 수령의 업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牧民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고,<sup>4)</sup> 군정 운영, 형정, 진휼 등 수령의 기본적인 업무<sup>5)</sup>와 함께 수령의 선정 여부를 밝히거나<sup>6)</sup> 19세기 수령과 이탈에 의한 수탈체제를 비판하는 연구<sup>7)</sup>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사례연구로서 관찰사와 주요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임실태<sup>8)</sup>나 그들이 추진한 시책<sup>9)</sup> 등도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 
- 1) 장병인, 1978,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이준희, 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일지사; 이희권,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 2)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 3) 이훈상, 1990, 『朝鮮後期의 鄉吏』, 일조각;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 4) 김선경, 2010, 「조선의 목민학 전통과 牧民心書」, 『조선시대사학보』 52; 김용흠, 2010, 「18세기 “牧民書”와 지방통치-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5.
  - 5) 구완희, 1992, 「조선후기 軍役釐整의 方向과 守旣」, 『조선사연구』 1; 심재우, 1998, 「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旣의 刑政운영」, 『규장각』 21; 문용식, 1999,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9.
  - 6) 임용한, 2007,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구완희, 1991, 「朝鮮後期의 收取行政과 守旣의 ‘要譽’: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북현사림』 14.
  - 7) 권기중, 2013,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호서사학회』 67; 2014, 「조선후기 수령의 지방재정 운영과公私관념-경상도 암행어사 서계를 중심으로-」, 『사림』 48.
  - 8) 김양수·김양식, 2004, 「조선후기 충청감사와 청주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시대 지방통치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사정리 그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통치가 관찰사와 수령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국왕으로부터 지역 군사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일정한 영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했던 병사, 수사, 변장이 바로 그들이다. 첨사, 만호라 불리는 변장들은 지리적으로 특정 군현 내부에 주둔하였지만, 수령과 별개로 鎭을 형성하여 독자적으로 鎭民을 지배하였다. 즉,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 장수에게는 군사적 기능과 역할만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도 감사, 수령과 별도로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태안에 巨鎭 지휘관으로 존재했던 안흥첨절제사(이하 안흥첨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도 안흥은 서해 최고 관방지이자 수로 교통의 핵심지로 고려시대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주목받던 곳이다. 안흥 지역 연구가 꾸준히 축적된 것도 안흥진이 지닌 위상 때문이다.<sup>10)</sup> 앞

『한국사연구』 125; 이선희, 2009,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 31; 박정민, 2018, 「한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 9) 조원래, 1985, 「18世紀初 順天府의 地方行政動態: 府使 黃翼再의 改善行政事例」, 『남도문화연구』 1; 노혜경, 2004, 「안정복과 황윤석의 대민정책 비교-목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005,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木川縣 鄉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6; 김경숙, 2013,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문광균, 2016, 「순암 안정복의 잡역 운영론과 그 실제-충청도 목천현감 재임 시기(1776~1779)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8;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守 趙社命의 시책」, 『한국사연구』 184.
- 10) 서정석, 1999, 「泰安 安興鎭城에 대한 一考察」, 『역사와 역사교육』 3·4; 김경옥, 2008,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 『역사학연구』 32; 탁태운, 2011, 「朝鮮後期 安興鎭의 設置와 軍餉 運用」,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태원, 2013,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2013,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학』 51; 진호신, 2019, 「태안 안흥량(安興梁)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해양문화재』 130; 박

서 언급한 문제의식, 즉 군사기관의 지방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흥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 실태, 안흥첨사의 군정·행정의 실상 등의 연구가 다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방 군사지휘관의 임명과 지방통치의 실상에 대하여 천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군사기관의 지방통치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부의 對안흥정책과 안흥첨사의 재임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비록 안흥진이 조선왕조의 군사진을 대별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연구가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군사시설의 지방통치 일면을 밝히는 사례연구, 기초연구로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안흥첨사의 지방 군정·행정의 실상은 후속 연구<sup>11)</sup>로 진행하고자 한다.

---

범, 2020, 「17~18세기 안흥진 운영의 제도화 과정과 한계」, 『해양문화재』 13; 유현재, 2020, 「태안 안흥진성의 교육적 활용」, 『중등교육연구』,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원; 심정보, 2020, 「안흥진성의 축조와 이설」, 『문물연구』 38; 서정석, 2021, 「안흥진성의 축조 시기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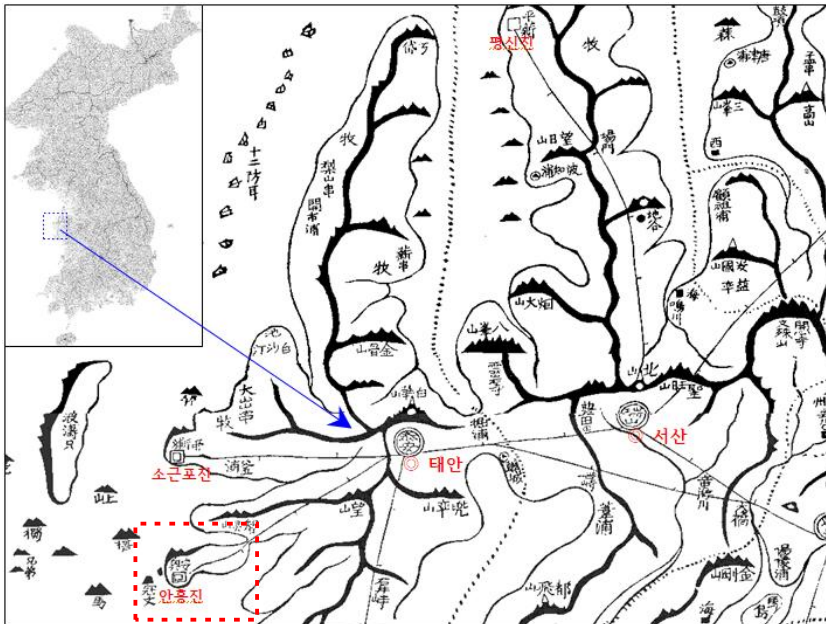
- 11) 성균관대 존경각(청구기호 B06B-0071)에는 안흥첨사의 지방행정 실상을 살필 수 있는 『牒報選集』이 존재한다. 이 자료는 1848~1849년 안흥첨사로 재임했던 徐典輔가 작성한 공문서이다. 이 자료에는 안흥첨사가 군향곡 관리, 진상물 조정, 군정 수팔 등 안흥진에 부여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내 마을이나 인근 고을 수령에게 보낸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안흥진의 운영 실상을 담고 있는 자료로써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 2. 안흥진 연혁과 안흥첩사의 위상 변화

### 가. 안흥진 연혁<sup>12)</sup>

태안 안흥진은 고대 이래로 해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고려시대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송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객관들이 설치되었는데, 安興亭 역시 그 중 하나였다.

<그림 1> 조선시대 충청도 안흥진의 지리적 위치



12) 안흥진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서태원, 2013, 앞의 논문, 『역사와 실학』 50에 자세하다. 여기서는 그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서술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특히 성종대 조운제도의 성립으로 충청, 전라, 경상도의 세곡이 선박을 통해 개경으로 상납되기 시작하면서 안흥지역은 조운선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경유지가 되었고, 이는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또한 안흥지역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성행하던 곳으로 해양방어상의 요충지였다. 1352년(공민왕 1)에 內府少尹 金暉南이 전선을 이끌고 왜적을 물리친 곳도 이곳이었다.<sup>13)</sup>

이러한 안흥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태안반도 서쪽 끝자락에는 安行梁萬戶鎭이 설치되었다. 안행량만호진이 설치된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404년(태종 4) 안행량만호진 李生年이 왜적과의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조심스럽지만 고려 말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 안행량만호진의 존속 시기는 길지 않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충청도에는 水軍都按撫處置使 아래 7곳에 만호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행량만호진은 이미 혁파된 상태였다. 그 결과 조선전기 안흥지역은 소근진의 병사가 나누어 지키는 分防處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소근진의 분방처로 존재하던 안흥량수는 임진왜란 직후 만호진으로 복설되었다. 안흥만호진의 복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순신의 문집인 『이충무공전서』와 『선조실록』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충무공전서』를 보면 1594년(선조 27) 3월 충청수사 구사직이 충청수영 전선 3척과 함께 결성대장 서복천, 소근포첨사 박윤, 마량첨사 강응호, 서천포만호 소희익, 비인대장 안훈, 안흥대장 최대관, 서천대장 김홍 등이 각각 판옥선 1척을 거느리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에 집결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른 진과 달리 안흥의 경우 代將이 전선을 지휘하였다는 점이다. 代將은 만호나 첨사 등의 수군지휘관이 없는

13)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원년 3월.

곳에 배치된 전선에 탑승하여 수군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보면 1594년(선조 27) 3월까지 안흥은 만호진으로 복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조실록』의 1595년(선조 28) 6월 6일 기사에는 안흥만호 許雋가 토지가 비옥한 지령산 근처를 개간하였으나 힘이 부족하고 그 일에 전념하지도 않아 크게 경작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1595년 6월 이전에 안흥만호진이 이미 복설되어 안흥만호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의 허수 관련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둔전이다. 둔전은 영이나 진 등 군사기관을 설치할 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토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허수는 신설된 안흥만호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령산 인근에 둔전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안흥만호진은 1594~1595년 사이에 복설되었다고 생각된다.

만호진이 설치된 이후 안흥의 위상은 점차 높아졌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명군의 파병과 훈련도감 창설 이후 휴전상태가 고착화되자 조선정부는 수많은 군량을 필요로 했다. 이때 전국 각지의 둔전이 조성되었는데,<sup>14)</sup> 1595년(선조 28) 안흥만호 허수도 지령산 일대에 둔전을 만들어 군량미를 확보한 다음 선박을 통해 조달하였다.<sup>15)</sup> 조선 수군이 칠천량전투에서 대패한 직후에는 일본 수군의 침공을 막아낼 방어기지로 안흥량과 견내량을 지목했고, 선조를 비롯한 일부 관료들은 안흥량에 전선을 모아 일진을 만들고자 했다.<sup>16)</sup> 그리고 선조 말엽 서산의 파지도진과

14) 송양섭, 2006,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1~31쪽 참조.

15)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6일(정미);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16)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29일(무오);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5일(계유).

당진의 당진포진이 폐지되면서 안흥진 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그 결과 1609년(광해군 1) 안흥만호진은 巨鎭인 안흥첨제사진(이하 안흥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sup>17)</sup>

1636년(인조 14)에 발발한 병자호란과 이후 효종의 즉위는 안흥첨사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 패배 이후 조정에서는 유사시 국왕이 피난갈 수 있는 보장처를 만들어 방어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그 핵심지가 강화도였다.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곳을 중심으로 서해안 방어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인조대 奇宗獻과 李敬輿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강화도는 한성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물산이 풍부하고, 경기, 황해, 충청, 전라 등의 수군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적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sup>18)</sup>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인조대 경기수영을 화랑에서 교동으로 이전하고 교동에 삼도통어영을 설치하였으며, 효종대에는 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 충청도, 전라도를 잇는 서남부 해안 일대에 강화도를 후원하는 거점을 두어 보장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1653년(효종 4) 남양부에 있던 영종만호진을 자연도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태안반도에 있던 안흥첨사진을 신진도로 옮기고, 기존의 진터에 육군을 배치하고 안흥산성을 개축하여 군향곡을 비축하였다. 1655년(효종 6)에는 전라도 격포도 강화도를 후원할 거점으로 인정되어 성을 쌓아 유사시 감사가 수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sup>19)</sup>

---

17) 『호서읍지』, 「태안」.

18) 송양섭, 2002,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撫營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222~224쪽

19) 육군본부, 2012, 「제4장 북벌론과 군사력 강화」,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391~399쪽

안흥첨사진의 신진도 이전은 李厚源에 의해 주도되었다.<sup>20)</sup> 1652년(효종 3) 9월 그는 강화를 방비할 방안으로 남쪽에 위치한 충청도 안흥에 군량을 비축하고, 첨사보다 지위가 높은 무신을 차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이 효종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듬해 그는 다시 경기의 선비 金石堅의 상소를 인용하며 재차 기존 첨사진과 달리 충청감영의 행영을 만들하고자 했다. 그의 의견에 대신들이 동의하면서 1653년(효종 4) 3월 새로운 안흥진, 즉 新鎭이 설치되었다. 신진은 바다를 두고 안흥산성을 마주보고 있는 서쪽 섬으로 본래 花亭島로 불렸다.<sup>21)</sup> 이 섬은 선조의 부마이자 영의정 申欽의 아들인 申翊聖[東陽尉]가 절수 받은 곳으로 기존 안흥진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적의 형세를 살펴보는데 이로운 지형이었다.

화정도에 신진이 설치되자, 이후원은 이곳에 산성을 쌓고 유사시 필요한 군항곡을 비축하고자 했다. 비록 舊鎭에 성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후 이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락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이후원은 직접 1655년(효종 6) 4월 안흥에 도착하여 신진과 구진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5월 효종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신진이 아닌 구진에 성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진은 물을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성시 많은 인력과 물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655년(효종 6) 5월 안흥진성 수축공사가 승인되자, 충청감사 權楛의 지휘아래 안흥첨사 李枝遠과 소근첨사 黃士誠이 축성을 감독하였다. 안흥산성 수축공사는 1656년(효종 7) 10월에 마무리되었다.

안흥산성 설치 이후 안흥진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20) 이하 안흥첨사진의 신진 설치와 안흥진성 축성, 방어영과 충청수영 행영의 변천 과정은 서태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2013, 『朝鮮後期 忠淸道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21) 『대동지지』 권5, 「충청도」, 태안.

안흥첨사가 머무르는 주둔지[新鎭]와 유사시 방어해야 하는 산성[舊鎭]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청감사가 自辟으로 선발한 中軍을 守城將으로 삼아 안흥산성을 지키도록 하고, 안흥첨사는 신진에 설치된 안흥진에 주둔토록 하였다. 그 결과 안흥진과 안흥산성은 각각 수군의 안흥첨사와 감영중군의 지휘아래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안흥첨사가 신진에서 머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섬 안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군들이 섬을 왕래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신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1669년(현종 10) 鄭太和, 許積, 沈之源 등 대신들은 신진을 폐기하고, 첨사가 안흥산성으로 들어가 방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안흥산성을 주관하던 감영중군을 혁파하고, 그가 담당하던 군항곡 관리는 태안군수가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결국 신진은 설치된 지 16년 만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안흥진은 안흥첨사가 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안흥진에 부여된 해방, 조운호송, 산성방어, 군항곡 관할 등의 업무로 인해 안흥진은 총 16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안흥산성에 안흥첨사가 주둔하기 시작한 1669년(현종 10) 이후 한말 지방군제가 개편될 때까지 11차례 바뀌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防禦營의 설치이다. 방어영은 종2품 방어사가 파견된 군사기관이다. 방어사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대 정착된 제도이다. 고려시대 양계뿐 아니라 남방의 큰 고을에도 방어사가 설치되었으나, 조선시대 들어 오면서 폐지되었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때 다시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전후 경기의 수원, 광주, 장단(이후 파주), 강원 의 회양(이후 철원), 평안도의 강계, 삼화, 함경도의 길주(이후 성진) 등지에 병마방어영이 설치되었고, 평안도 선천과 삼화, 황

해도의 소강에도 수군방어영이 설치되었다.<sup>22)</sup>

<표 1> 조선시대 안홍진의 변천과정

시기	진명	지휘관	소재지	비고
1404년(태종 4) 이전	안행량만호진	안행량만호	舊鎭	
1454년(단종 2) 이전	폐진	-	-	
1594년(선조 25)	안홍량만호진	안홍량만호	舊鎭	안홍만호진 복설 추정
1609년(광해 1)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舊鎭	
1653년(효종 4)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新鎭	감영중군 구진 주둔
1669년(현종 10)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舊鎭	
1675년(숙종 1)	안홍방어영	태안군수겸 안홍방어사	邑城	안홍진첨사 신진 주둔
1680년(숙종 6)	안홍량첨사	안홍량첨사	舊鎭	
1706년(숙종 32)	태안방어영	태안부사겸 방어사	邑城	안홍진첨사 신진 주둔
1711년(숙종 37)	안홍방어영	안홍량첨사겸 수군방어사	舊鎭	
1712년(숙종 38)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舊鎭	
1779년(정조 3)	충청수영 행영	충청수사	保寧	안홍진첨사 폐지
1785년(정조 9)	충청수영 행영	충청우후	舊鎭	안홍진첨사 폐지
1790년(정조 14)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舊鎭	
1866년(고종 3)	태안방어영	태안부사겸 호서수군방어사	邑城	안홍진첨사 폐지
1885년(고종 22)	안홍량첨사진	안홍량첨사	舊鎭	
1895년(고종 32)	폐진	-	-	

22) 차문섭, 1990, 「朝鮮後期 兵馬防禦營 設置考」, 『국사관논총』 17.

안흥첨사진이 방어영으로 승격된 횃수는 총 4회로 시기별 해양방어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론이 국왕의 의도와 부합하면서 방어영으로 승격되었다. 그 중 3회는 태안군수[태안부사]가, 나머지 1회는 안흥첨사가 방어사를 겸임하면서 안흥진과 안흥산성을 관할하였다. 그런데 태안군수가 방어사를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1675년(숙종 1)·1706년(숙종 32)과 1866년(고종 3)의 사례가 다르다. 1675년(숙종 1)·1706년(숙종 32) 시기에는 태안의 수령이 방어사를 겸임해도 안흥첨사진이 존치되어 신진도에 주둔했으나, 1866년(고종 3) 시기에는 안흥첨사진이 혁파되었다.

4차례 방어영이 설치되었음에도 營衙門으로서의 기간은 상당히 짧다. 이는 방어사와 수사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안흥첨사진은 본래 충청수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방어영으로 승격되면서부터 독립적인 지휘권을 부여받았다.<sup>23)</sup> 방어사는 종2품이었으므로 감사와 병사의 품계와 같았다. 다만 감사는 巡察使의 직임을 띠고 있으므로 상관으로 대우해야 했다. 수사는 정3품 당상관으로 비록 방어사에 비해 품계는 낮지만, 통상 방어사를 역임한 이후에 병사와 수사 등 闔帥의 직임에 추천될 수 있었으므로 그 지위가 결코 방어사보다 낮지 않았다.<sup>24)</sup> 그러므로 방어영 설치 이후 방어사와 수사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712년(숙종 38) 대사헌 李晩成의 상소에서 알 수 있다.

한 번 安興의 名號를 (방어영으로) 올린 후부터 水營에서는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대저 屬邑이 나누어지면 재원을 관출할 곳이 많지 않고, 軍卒이 적어지면 거두는

23) 이하 방어사와 감·병·수사의 관계, 방어영과 행영시기에 발생하는 제문제에 대한 서술은 서태원, 2013, 앞의 논문, 130~144쪽에 자세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4) 『속대전』, 「병진」, 외관직, ‘節度使 以曾經邊地守令及防禦使者 通擬’.

것이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저 帥臣(수사)이 매우 싫어하는 바가 단지 권한이 나누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거만스레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sup>25)</sup>

방어사는 수사와 동등한 지휘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수영의 속읍이었던 군현과 수군의 일부를 이속받았다. 수사는 수영의 규모와 재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방어영 설치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태안현감 사이에서도 연출되었다. 방어영 설치 이전에는 태안현감이 안홍첨사를 업신여기고 안홍진 소속의 백성을 침탈하기도 했으나,<sup>26)</sup> 방어영 설치 이후에는 반대로 1개면 정도의 호구와 전결을 안홍에 넘겨줘야 했다.

첨사진이 독진인 방어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행정구역이 필요했다. 방어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관출하기 위해서이다. 안홍방어영이 설치되면서 태안의 근서면 5리가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태안현의 행정 및 경제적 영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충청수사는 수영의 병력 부족, 지휘체계의 혼란, 해안방어의 허술함 등을 이유로, 태안현감은 관할행정의 불편함을 이유로 안홍방어영 혹은 태안방어영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4차례 방어영이 설치되었음에도 그 존속기간은 총 30년에 불과했다.

한편 안홍첨사진은 충청수영의 行營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충청수영을 안홍으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海防論이 한창이던 1706년(숙종 32) 충청감사를 역임했던 金演은 안홍량의 지세가 험준하고 바다를 보는데 막힘이 없을뿐더러 삼남의 세곡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는 사실을 근거로 충청수영을 이곳으로 옮기자

25) 『숙종실록』 권51, 숙종 38년 6월 4일(병진).

26)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2월 13일.

고 건의하였고, 1711년(숙종 37)에는 호서순무사 李晩成, 영조 1년(1725)에는 무신 申命仁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sup>27)</sup> 이 논의는 충청수군의 主鎮인 충청수영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반대에 계속 무산되었다. 그러다 1779년(정조 3) 영의정 金尙喆은 충청수영이 海口 안으로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수가 많지 않으면 배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안흥에 행영을 설치하고, 풍화시(3~8월)인 6개월 동안 행영에서 근무하자고 주장하였다.<sup>28)</sup> 그 의견에 훈련대장 具善復과 수어사 徐命膺이 동의하자 안흥에 행영이 설치되었고, 종래 있던 안흥첨사진은 폐지되었다.<sup>29)</sup> 그리고 1785(정조 9)부터는 충청수사 대신 수군우후가 안흥의 충성수영 행영을 관할하였다.

충성수영의 행영 설치는 1779년(정조 3) 정조의 江都 방어체계 기획과 연결되어 있다. 정조는 강화유수, 통어사, 영종방어사 등이 복잡다단하게 관할하던 강화의 군사지휘체계를 강화유수 중심으로 일원화했는데, 이와 연계하여 강화와 가까운 안흥량에 충청수영 행영을 설치했던 것이다. 정조가 주도한 강도 방어체계는 1789년(정조 13) 통어영의 강화 이속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면서 원상복구되었다.<sup>30)</sup> 이에 따라 안흥의 충청수영 행영도 통어영이 강화유수에서 분리된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충청수영과 안흥 행영의 거리가 먼 것에서 비롯되는 행영에 소속된 영리와 백성들의 불편함, 수사의 행차에 따른 접대 부담 등 내부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폐지되었다.<sup>31)</sup>

27)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4월 14일;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1년 3월 5일.

28) 『가고수영』에 따르면 충청수영의 無浮日 즉, 한달 동안 배가 뜰 수 없는 일수는 5일, 안흥진의 무부일은 2일이다(김명래, 2019, 「충청 수군營鎮과 연해郡縣의 船所 연구」, 『해양문화재연구』 12, 194쪽). 유사시 전선이 출전하기 위한 지리 환경적 조건은 안흥진이 충청수영보다 좋았다.

29)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3월 29일.

30) 송기중, 2019,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84~285쪽.

31)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2월 22일;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행영이 폐지되면서 안홍에는 다시 첨사가 임명되었다. 이때 복설된 안홍첨사진은 서구 열강의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던 1866년(고종 3) 태안방어영의 설치로 도로 폐지되었으나, 1885년(고종 22)에 다시 복설되었다. 하지만 1895년(고종 32) 지방군제 개혁으로 인해 결국 廢鎭되고 말았다. 폐진 이후 안홍진성은 남양조씨 무덤의 이상처로 사용되었고,<sup>32)</sup> 성내 남아 있던 공해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소실된 태안군 관아를 복원하거나 개항 이후 신설된 옥구항사무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로 활용되었다.<sup>33)</sup> 이로 인해 20세기 문턱에서 안홍진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 나. 안홍첨사의 久勤·履歷·邊地窠

조선후기 중3품직인 안홍첨사에게 부과된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안홍첨사가 강화의 군향곡을 관리하는 管餉使, 안홍산성 지휘관인 守城將, 안홍량에서 조운선을 점검하는 協守將 등의 직함을 겸직하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안홍첨사는 상기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했고, 국왕은 책임자를 찾아 이곳에 배치해야 했다.

그렇다면 17세기 이후 안홍첨사의 위상은 어떠했을까? 이는 1653년(효종 4) 특진관 이일상과 효종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신이 安興의 일 때문에 명을 받들고 가서 영상(정태화)과 의논했더니, 영상이 말하기를 ‘의당 武臣 가운데 闔帥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첨사에 제수하여야 하는데 土兵이 반드시 적을 것이니 그 곁의 鎭浦에 있는 군사들을 옮겨 지급해 주어야 하며, 군량의

32) 경자일기(규장각 소장 古4254-44).

33) 『서산읍지』, 공문편안(규장각 소장 奎18154); 『옥구항보첩』(규장각 소장 奎17868).

저축도 반드시 부족할 것이니 남쪽에서 올려오는 漕運穀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sup>34)</sup>

이 시기는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중앙 및 지역의 방어체계가 정비되고 있던 때였다. 당시 안흥진에는 이후원의 건의로 산성이 증축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일상은 영의정 鄭太和가 무신 중 곤수 즉, 兵使나 水使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안흥첨사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효종은 정태화의 생각에 적극 동조하면서 병조에게 분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안흥첨사를 병·수사에 의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무관으로 제수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안흥진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종3품의 안흥첨사직에는 정3품의 무관들이 주로 임명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안흥첨사에 적당한 인사가 없으면 禁軍將에서 차출하여 제수한다'는 『승정원일기』의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안흥첨사직에 대한 인사규정은 영조대 추진된 안흥항 방조제 공사<sup>36)</sup>가 실패로 돌아간 1737년(영조 13)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해 12월 우의정 宋寅明은 안흥진, 백령진, 만포진 등이 해상 및 육로방어의 요충지지만, 첨사의 봉록이 적고 먼 섬에 있기 때문

34)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3월 18일(갑신).

35) 『승정원일기』 399책, 숙종 27년 9월 14일; 『승정원일기』 449책, 숙종 35년 7월 26일; 『승정원일기』 701책, 영조 6년 2월 12일; 『승정원일기』 864책, 영조 13년 12월 3일; 『승정원일기』 994책, 영조 21년 11월 24일.

36) 1728년(영조 4)과 1731년(영조 7) 두 차례 해난사고로 조선정부는 총 130척의 조운선이 침몰되었다. 그 중 상당수의 배는 안흥항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던 까닭에 외항에 정박해두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우의정 조문명은 안흥항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石築 즉, 방조제 공사를 제안했다. 방조제 공사는 안흥첨사 이선의 주도 아래 1733년(영조 9) 3~4丈을 쌓는 성과를 보였지만, 박문수 등 주요 관료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사이 공사의 주창자 조문명이 사망하고, 실제 공사책임자였던 이선이 군항곡 비리에 연루되면서 이 사업은 1737년(영조 13) 실패로 돌아갔다(안흥항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문광균, 2019,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260~261쪽 참조).

에 첨사 대상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邊地窠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sup>37)</sup>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신들이 절도사[병사나 수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방어사를 역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방어사 외에 승지나 변지의 수령을 역임해도 절도사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변지란 강계, 위원, 초산, 벽동, 창성, 삭주, 의주 등 평안도의 강변 7읍과 함경도의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 6진, 그리고 무산, 삼수, 갑산 등 북방 변방이었다. 변지 수령과 별개로 변지의 첨사직을 역임해도 절도사에 의망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를 변지첨사라고 하는데 18세기 중엽 변지첨사는 아이, 성진, 해산, 고령, 장진, 훈용, 고군산, 다대포 등이 있었다.<sup>38)</sup>

변지과와 달리 履歷窠 첨사도 있었다.<sup>39)</sup> 이력과는 邊地履歷이라고도 부르는데, 변지를 역임하지 못한 무신의 경우 이력과를 역임하면 방어사에 의망된 후 절도사가 될 수 있었다.<sup>40)</sup> 즉, 이력과는 변지과와 마찬가지로 정3품 관직으로 갈 수 있는 루트인 셈이다. 이력과는 방어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형세가 그렇지 못해 독진의 형태로 만든 진의 관직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안흥에는 방어사를 두어야 하나, 방어영을 설치하는데 형편이 미치지 못하므로 영구히 첨사를 변지이력으로 만들자’라거나, ‘법성진을 독진으로 만들어 변지이력의 자리를 삼고, 지별과 전정이 있는 무신을 임명하여 당상으로 옮겨가는 자리로 삼으라’는 정조와 충청

37)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2월 9일.

38) 『典律通補』, 「兵典」, 外官職.

39) 무반의 인사 규정을 담고 있는 『西銓政格』에는 첨사를 邊地, 履歷, 久勤, 自辟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진을 기록해두었던 사실을 통해 변지과와 이력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西銓政格』 자료에 대해서는 정해은, 2003, 「조선후기 西班 人事 규정집 『西銓政格受敎筵奏輯錄』의 검토」, 『장서각』 10, 참조.

40)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감사의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sup>41)</sup>

이력과 첨사진은 방어영이 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필요했다. 이는 1789년(정조 13) 법성진과 군산진을 이력과로 만드는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이해 호조판서 徐有隣과 선혜청당상 李在簡은 법성창과 성당창 등 조창이 있는 법성진과 군산진을 변지이력과로 만들고자 요청했다. 이때 이들은 영광군의 진량면을 법성창에, 옥구의 북면을 군산진에 각각 이속해주면 獨鎭으로서 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제안에 좌의정 李性源, 우의정 蔡濟恭, 훈련대장 李柱國, 어영대장 李邦一, 총융사 李漢豐 등의 논의 끝에 결국 두 진은 모두 이력과가 되었다.<sup>42)</sup>

다시 송인명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그는 변지첨사가 임명되는 지역의 예대로 안흥, 백령, 만포를 변지과로 전환하면 능력있는 무신들이 채수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 대신과 판서들은 백령진과 만포진은 변지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안흥진은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sup>43)</sup> 1739년(영조 15) 11월 병조판서 金聖應도 안흥진과 부산진도 백령진·만포진의 예대로 변지첨사 자리로 만들어줄 것을 주장했으나 안흥진은 또다시 배제되었다. 안흥진은 서울과 가깝고 해로도 멀지 않다는 이유였다. 부산진은 이때 변지과로 전환되었다.<sup>44)</sup>

한동안 잠잠하던 안흥진의 이력과 설치 논의는 1790년(정조 14) 4월 안흥진이 복구되자 재개되었다. 이 논의는 정조의 전교에서 비롯되었다.

41)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3년 윤5월 23일;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42)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윤5월 23일.

43)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2월 9일.

44)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5년 11월 6일.

安興에 첨사를 도로 두는 데 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關防이란 것보다도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고질적 폐단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연전에 대신의 회계에 나누어 설치할 것으로 요청한 것은 所江鎭의 관방을 모방할 것만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는 것은 미처 두루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혐의는 가볍고 懷保하는 정사는 중요한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대로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충과 이와 같은 사세로 보아 鎭將의 책임자를 얻지 못하면 폐단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앞서 차임해 보낸 사람들은 늙어서 제대로 일을 보살피지 못하거나 무능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대개 세력이 없고 하등의 평가를 받아 허물을 씻고자 방어사의 길에 올라 있는 자들로서 조세 운반을 호송하는 일에는 명실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교체되었다. 만약 群山鎭의 邊地窠를 이곳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면 별도로 방어사 한 자리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다. 방어사 자리는 본래 적지만 지형이 永宗鎭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방어사의 이력으로 쳐주는 자리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다만 좀 망설이는 이유는 防禦營을 설치하려면 특별한 경비에 대해 유의할 만한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니 경들은 또한 자세히 더 헤아려보고 품의하여 처리하라. 경연에 올라 주달하고 답변하고 할 때에는 늘 말로써는 의사를 다 표출하지 못하므로 글로 자세히 써서 覆奏하는 것이 제일 낫다. 묘당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도록 하라.<sup>45)</sup>

정조의 말에 따르면 종래 안흥첨사는 늙어서 제대로 일을 보살피지 못하거나 무능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인사고과에서 받은 하등의 평가를 일소하고자 부임해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막중한 조운선 호송업무에 차질

45)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4월 7일(정사).

이 생겼고, 첨사가 수시로 교체되어 민폐가 심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조는 군산진의 邊地履歷窠<sup>46)</sup>를 안흥진으로 옮겨오거나, 변경 방어영의 이력과로 만들거자 했다. 하지만 방어영 설치의 재정문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정조는 비변사 신료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이를 후 좌의정 蔡濟恭은 안흥의 형세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제비집 같아서 대장이 절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애초 방어영의 기지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조는 안흥첨사자리를 이력과로 만드는 것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우의정 金鍾秀도 방어영은 많은 재원을 소모한다는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이었다.<sup>47)</sup> 안흥진의 설치와 名號 문제는 10일이 지난 후 재차 논의되었다. 이때 정조는 이력과의 첨사진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체제공도 방어영 보다는 변지이력과가 낫다고 했으며 김중수도 방어영 설치에 반대하였다.<sup>48)</sup> 이후 논의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안흥진첨사는 이력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안되어 첨사직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병조는 근래 오랫동안 근무한[久勤] 무신 중 외방 변장으로 나갈 사람이 많지만 자리가 부족하니 邊地窠, 履歷窠, 遞付窠 중 아이진, 가덕진, 신광진, 평남진 등 4진을 모두 久勤窠로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구근과는 조선후기 중앙군문에서 적체된 대기자들을 관직에 수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구근은 『大典通編』의 「兵典」京官職條에 따르면 ‘각 營門에서 久勤한 사람에 대해서는 45개월을 채운 후, 부지런히 근무한 사람을 보고하여 邊將

46) 정조는 군산첨사직을 변지과로 발언하고 있으나, 이 시기 편찬된 『典律通補』에는 군산은 履歷窠로 명기되어 있다.

47) 『승정원일기』 1667책, 정조 14년 4월 16일(계축).

48) 『승정원일기』 1677책, 정조 14년 4월 16일(계축).

으로 추천하여 차출한다'49)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즉, 중앙군문에서 45개월50) 동안 근무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의 변장 즉, 첨사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조가 제시한 이 안에 채제공이 동의하면서 4진은 구근과로 변경되었다. 정조는 여기에 안홍진과 고군산진도 추가로 구근과로 전환하도록 했다.51) 이력과는 당상관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였다면, 구근과는 장기근무 무신에 대한 예우 차원의 자리였다. 따라서 이력과의 구근과 전환은 일종의 안홍첨사 직급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안홍진을 이력과에서 구근과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는 충청감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791년(정조 15) 5월 충청감사 鄭存中은 안홍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홍진을 변지이력첨사진으로 영구히 정하고, 속읍을 통제할 수 있는 무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52) 안홍첨사는 수성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城操[군사훈련]시 홍성, 서산, 태안, 당진, 해미 등 5읍 수령들을 절제해야 했으나 구근첨사는 변지이력첨사에 비해 지위와 위세가 낮았으므로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53) 그러나 정조와 비변사는 구근과 전환을 결정한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쉽게 바꿀 수 없으니, 城操시에만 수영 우후가 수성장을 겸하여 수령들을 지휘하도록 했다.54) 충청감사를 역임한 우의정 朴宗岳 역시 '안홍첨사를 구근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보내기 때문에 호령이 엄하지 않고 가림주구가 심하여 비웃음을 주고, 폐단을 끼치는 것이

49)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各營門久勤 滿四十五朔後 始報勤仕 擬差邊將'

50) 구근은 본래 30개월이었지만, 1710년(숙종 36)에는 60개월로 늘어났다가 1723년(경종 3) 45개월로 고정되었다(정해은, 2003, 앞의 논문, 93쪽).

51) 『승정원일기』 1683책, 정조 14년 11월 23일(기해).

52)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53)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4년 1월 25일.

54)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월 4일.

한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도의 이력과 교환할 것을 요청하였다.<sup>55)</sup> 이번에도 그의 의견은 채택되지 못했다.

정조와 중앙 관료들이 안흥첨사 이력과 전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는 壯勇營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조대 국왕 호위와 화성행궁 방어를 위해 설치된 장용영에는 많은 경관직 무관들이 있었다.<sup>56)</sup> 이들 중 일부는 장기 근무 후 지방 변장으로 승진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근첨사진이 필요했고, 안흥진도 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구근과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1799년(정조 23) 12월 정조는 安興·加德·古群山·阿耳 등 4진의 첨사는 문관의 시종신, 무관으로 별군직 혹은 변지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차출하고, 그 후임은 다시 구근과첨사로 보내도록 지시하였다.<sup>57)</sup> 즉, 구근과와 문신·이력과를 절충하여 교대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안흥첨사직을 둘러싼 구근·이력 논쟁은 정조 사후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비로소 해결되었다. 그 운을 댄 사람은 병조판서 李秉鼎이었다. 그는 1799년(정조 23) 정조의 하교를 언급하면서, 지금 장용영이 혁파되어 장기근무가 없어졌으므로 구례에 따라 이력과로 만들자고 했다. 이에 대하여 영의정 심환지는 안흥, 가덕, 고군산, 아이 등 4진이 모두 관방과 관계되어 先朝도 간간이 문무관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송한 적이 있다는 전례를 들면서 이병정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우의정 李時秀 역시 현재 중앙군문의 구근 장교 중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력의 첨사자리로 만들어 임명하는

55)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3월 15일.

56) 장용영의 군제에 대해서는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의 推移」, 『사학연구』 78과 박범, 2018,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57)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2월 13일.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sup>58)</sup> 순조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1802년(순조 2) 6월 안홍첨사는 이력과로 변경되었다. 이력첨사는 국왕에게 사조할 때 殿內에 들어서서 인사할 수 있었으며, 국왕으로부터 마필을 별도로 제공받았다. 이력과로 전환된 안홍첨사직은 19세기 전반 일반첨사로 강등되었으나, 1861년(철종 12) 다시 변지이력과로 陞作되었다.<sup>59)</sup>

### 3. 안홍첨사의 재임실태와 특징

#### 가. 안홍첨사의 제수와 재임 실태

조선시대 첨절제사는 전국 각진의 군사시설에 설치된 종3품 서반직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첨절제사는 ‘무예를 시험 본자로 차출하되 무과급제자, 검사복, 내금위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무예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하되, 무과급제자나 검사복, 내금위 등 국왕을 호위하는 무관은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가족을 데리지 않고 가는 경우 900일 즉, 30개월이었고, 첨절제사와 만호를 지낸 자는 수령을 역임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sup>60)</sup>

17세기 이후 첨사에 대한 인사규정은 보다 세밀해졌다. 邊將에 해당하는 첨사는 파직에 해당하는 죄라도 후임 첨사를 대면 후에 교체되었고, 변지에 있는 첨사는 1년 이내에 다른 관직에 의망

58) 『승정원일기』 1854책, 순조 2년 6월 10일.

59) 『승정원일기』 2642책, 철종 12년 7월 25일.

60)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강계·삼수·감산에 있는 첨사와 만호는 宣薦人, 즉 무과급제자와 한량 중 명망 있는 집안의 인사로 선전관에 천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임명하였다.<sup>61)</sup> 조선후기 정부는 국경 일대에 배치된 첨사와 만호에 대한 인사규정을 강화했는데 이는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경험한 국경방어선 붕괴에 따른 위기의 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1609년(광해군 1)에 설치된 안흥첨사에 대한 임명과정과 재임실상은 어떠했을까? 이 사실을 부록에 있는 안흥첨사 역대 명단<sup>62)</sup>을 통해 살펴보자. 현재까지 파악한 안흥만호와 안흥첨사는 총 152명이다. 이 수치에는 사료상의 한계로 선조, 광해군, 인조대의 만호와 첨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효종 즉위 이후, 다시 말해 안흥진성이 개축된 이후로는 거의 모든 첨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효종대 이후 첨사를 지낸 140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표는 효종~고종대까지 안흥첨사로 부임한 인물들의 직전 관직과 품계이다.

61) 정해은, 2001,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62) 현재 안흥첨사 선생안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연대기사료를 비롯하여 읍지, 개인문집, 고문헌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안흥첨사 역대 명단을 거의 복원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사료의 부족으로 안흥첨사 역대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복원하기가 어려웠으나, 다행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중인 『外案』(K2-571)에는 1830년(순조 30) 金履協부터 1894년(고종 31) 崔敬國까지 총 37명의 안흥첨사가 수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부표>의 안흥첨사 역대 명단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흥첨사의 명단과 재임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2> 조선후기 안홍첩사 제수 직전 직위와 품계

구분	경관직				외관직											합계				
	정3	종4	종9	미상	정3				종3	종4	종5	종6	종9	미상						
	오위장등	훈국파총	훈국초관		수사	영장	우후	중군	목사	첨사	부사	만호	군수		현감		판관	현령	칼방	권관
효종										2		1		1				2	6	
현종	2					2					3			1					8	
숙종	7	1			1	3	1			2	7		1	1		1			25	
경종						2							1						3	
영조	15							2	2	3	9			3					34	
정조	2		2	2						1	1	1						1	10	
순조	16		1					2		1									20	
헌종	6									1	1						1		9	
철종	8			1							1								14	
고종	4						1							1					11	
합계	60	1	3	3	1	7	2	4	2	8	24	1	3	6	1	1	1	1	11	140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인원 140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8명[오위장, 수사, 영장]이 정3품 상계인 절충장군 관직을 역임한 후 안홍첩사에 제수되었다. 68명의 인물 중 대다수인 60명은 京官職으로 근무 중 제수되었는데, 주로 오위장, 우림장, 내금위장, 금군장 등으로 국왕 숙위부대장을 지낸 인물들이었다. 이 중에는 전라좌수사를 역임하고, 안홍첩사로 부임한 사례[朴宣興] 등 上職에 있다가 좌천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정3품 당하관을 역임하다가 안홍첩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8명이다. 그 중 6명은 중군, 우후 등의 西班職였고, 2명은 목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종3품 이하

에서 안홍첨사에 제수되는 경우는 5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 수령이나 진장을 지내다가 안홍첨사로 옮겨왔다. 그 중 부사와 첨사 등 같은 官階로 넘어온 사람이 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군수, 현령, 현감 등 하위 관직에서 승진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홍첨사 임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령이나 진장을 지낸 후 바로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외관직으로 있다가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19세기 이후에는 그 경향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위장, 우림장, 내금위장, 금군장 등 중앙의 군직에서 안홍첨사로 제수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서반 인사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종9품직에서 안홍첨사로 제수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안홍첨사에 제수된 시기는 1790~1802년이다.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履歷窠였던 안홍첨사직이 久勤窠로 전환되었던 때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혹 오래 근무한 인물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홍첨사에 임명한 경우[崔台耆]도 있었지만,<sup>63)</sup> 구근과로 전환된 직후 정조는 검칙장교 呂從周, 장용영 기패관 申德龍, 어영청 행수교련관 王漢佐, 훈련도감 초관 李運祥, 노량진 별장 張忠賢 등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안홍첨사에 제수하였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안홍첨사로 부임한 무관들의 출신과 연령대는 어떠할까? 다음 <표 3>을 통해 살펴보자.

63) 『승정원일기』 962책, 영조 19년 8월 9일, ‘上曰 崔台耆如何耶 宗玉曰 安興姑無大段可爲之事 而台耆最久勤 故欲爲疏滯而擬望矣’.

<표 3> 조선후기 안홍첩사 중 역대 무과급제자 나이

구분	15~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0~ 45세	급제(%)	급제 불명	합계
효종			2				2 (33.3%)	4	6
현종			1	1	1		3 (37.5%)	5	8
숙종		6	1	5	1	1	14 (56%)	11	25
경종				1			1 (33.3%)	2	3
영조		3	6	2	2		13(38.2%)	21	34
정조			1				1 (10%)	9	10
순조		1	1	1	5		8 (40%)	13	21
현종			2				2 (25%)	7	9
철종	3	1	3				7 (53.8%)	6	13
고종							0 (0%)	11	11
합계	3	11	17	10	9	1	51(100%)	89	140

효종대 이후 부임한 140명 중 인물 중 무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는 51명이다. 그 중 숙종과 영조대 급제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순조와 철종대이다. 고종대는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과거 급제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조대와 고종대는 안홍진이 혁파된 적이 있었고, 경종은 재임기간이 짧아 급제자 수가 1명이거나 없다. 무과 급제시 나이는 평균30세이다. 이들은 무과 급제 후 안홍첩사에 부임하기까지 약 28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다음의 몇몇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산진첩사 최세규가 었드려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력을 묻자, 세규가 대답하기를, ‘무과에 급제[1693년 급제]하고, 선전관에서 감찰로 읍긴 후 자급이 올라 봉산군수, 안홍첩사에 제수되었습니

다'라고 하였다.<sup>64)</sup>

김해부사 신명윤이 나아가 엎드려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 이 이력을 묻자, 명윤이 대답하기를 '신미년(1691) 무과 출신으로 참하 무검으로 처음 입사하여 선전관에 이배되었습니다. 훈련원주부로 출륙[6품으로 승진]한 후 도총부 도사, 전라좌수영 우후, 훈련도감 첨정, 도청부 경력, 황해병사 우후, 대구영장을 지냈습니다. 당상관(정3품 상계)이 된 후 금군장, 칠곡부사, 나주영장, 부령부사, 안흥첨사, 부산첨사, 단천부사를 지냈고, 지금 본직에 임명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65)</sup>

안흥첨사 양현익이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직과 성명을 묻자, 현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안흥첨사 양현익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력을 묻자, 현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기묘년(1699) 무과 출신으로 부장, 무검선전관, 훈련도감 판관, 양화첨사를 역임하다가 褒啓로 가자되어 오위장, 산산첨사, 국별장, 자산부사, 평안감영 중군을 지냈고, 지금 임명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66)</sup>

최세규, 신명윤, 양현익은 각각 1706년(숙종 37), 1721년(경종 1), 1728년(영조 4)에 각각 안흥첨사에 제수된 인물이다. 이들은 1693년, 1691년, 1699년에 무과에 급제했는데, 이를 통해 보면 각각 첨사에 제수되기까지 사환경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무과 급제→선전관→중앙 서반직→지방수령 및 변장 등의 과정을 통해 안흥첨사에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과 급제부터 안흥첨사가 되기까지 최세규, 신명윤, 양현익은 각각 13년, 30년, 29년의 시간이 걸렸다. 가문의 영향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안흥첨사에 제수되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과 급

64) 『승정원일기』 599책, 영조 1년 8월 19일.

65) 『승정원일기』 628책, 영조 2년 12월 1일.

66) 『승정원일기』 657책, 영조 4년 3월 4일.

제자 출신 51명의 평균 부임시 연령은 약 56세였다. 서해안 최전선에서 왜구와 황당선을 막아내고, 조운선을 점검하며 막대한 군항곡을 관리하는 장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정조가 한때 ‘앞서 역임한 자들이 늙어서 살피지 못하고, 몽매하여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안홍첨사를 邊地窠나 防禦使로 승격하고자 했던 것<sup>67)</sup>도 이 때문이었다.

<표 4> 조선후기 안홍첨사 재임기간

구분	1~6 개월	7~12 개월	13~18 개월	19~24 개월	25~30 개월	31~36 개월	37~42 개월	미상	합계
효종		2	1	1	1			1	6
현종	1		2	3	1			1	8
숙종	3	6	2	3	9	2			25
경종	1					2			3
영조	6	10	6	4	7	1			34
정조	3	1	2	2	2				10
순조	2	2	5	4	6		1		20
헌종		2	3	3	1				9
철종	4	5	1	1	3				14
고종	1	2	5		1			2	11
합계	21	30	27	21	31	5	1	4	140

안홍첨사의 재임기간은 법적으로 30개월로 정해져 있었다. 병사, 수사, 영장, 중군, 우후 등 정3품 이상은 拜辭日 즉, 국왕에게 사조하는 날부터 근무일수에 포함되었지만, 그 첨사와 만호 등은 근무지에 도입한 직후부터 계산되었다.<sup>68)</sup> 변지의 무관과 영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체직을 도모하는 경우 이력[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

67)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68) 『兩銓便攷』, 卷2, 「兩銓簡滿」.

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재임기간을 채우고자 했다. 다만, 사고를 만나 정해진 달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력으로 인정해주었다.<sup>69)</sup>

조선후기 140명 안흥첩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7개월 5일이다. 파직, 사망, 유배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수령을 제외하면 약 19개월이다. 왕대별로 평균 재임기간을 계산하면 경종대가 1명당 20개월 18일로 가장 길고, 순조와 헌종대가 각각 19개월 10일, 숙종대 19개월 5일 순서이며, 정조대가 철종대가 14개월 정도로 제일 짧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5~30월까지 근무한 안흥첩사는 전체 23.5%에 해당하는 31명, 7~12개월은 20.5%인 27명, 13~18개월은 19.6%인 26명, 1~6개월과 19~24개월은 각각 15.9%인 21명, 31~36개월은 3.7%인 5명이다. 연임으로 인해 순조대 40개월을 근무한 첩사[심우상]도 있다. 이러한 안흥첩사의 재임실태가 당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邊地窠인 다대포첩사의 경우 1인당 평균 재임기간이 17개월 18일이었던 점<sup>70)</sup>을 통해 볼 때 첩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이 정도 수준이었으리라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 나. 안흥첩사의 이임과 교체사유

140명의 첩사 중 유배, 충군, 파직, 미상인 자 49명을 제외한 91명은 중앙과 지방으로 관직으로 다시 제수되었다. 91명 중 60명은 경관직에 제수되었고, 약 40%는 부호군이 되었다. 부호군은 五衛都總府의 종4품 관직으로 임기를 마친 별도의 보직이 없는 무신들에게 내려주는 직책이다. 이 자리는 무신들이 다음 관직에 임명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관직으로 활용되었다. 문관뿐만 아니라 고위

69)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70) 이원균, 1984, 「朝鮮時代の 水使와 僉使의 交遞實態」, 『부산수산대학교논문집』 33, 210~214쪽.

무관직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조선후기 안홍첨사의 이임 현황

구분	경관직			외관직									과 직	정 배	충 군	미 상	합 계
	정3		중4	정3				중3		중4	중6						
	오 위 장 등	기 사 장 등	부 호 군	수 사	영 장	우 후	중 군	목 사	부 사	첨 사	군 수	현 감					
	효종	1						1	1								
현종	2	1	2		1	1						1				8	
숙종		1	6	5	2				2	3	1	4	1			25	
경종			1		1							1				3	
영조	7		9				1	2	1	1		12			1	34	
정조	1		4									5				10	
순조	4	1	10		1							4				20	
헌종	2		3	1		1						2				9	
철종		1	1			2				1		5			4	14	
고종		3					1					1	1		5	11	
합계	17	7	36	6	5	4	1	2	5	5	2	1	36	1	2	10	140

경관직 60명 중 오위장, 검사복장 등의 정3품 절충장군 당상의 관직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24명이다. 오위장 등의 자리에서 첨사를 지내고 다시 오위장 등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안홍첨사의 경우 8명이 이 사례에 해당되었다. 한편 일부는 중앙 군문의 천충으로 제수받기도 했지만, 19세기에는 주로 친군별영이나 통어영의 기사장에 임명되었다.

외관직으로 나간 사람은 31명이다. 그 중 상직인 정3품 절충장군 당상관인 충청수사, 전라수사, 영장으로 陞敍된 인물은 11명이었다.

李立身, 韓根, 韓樞, 申鍵, 朴宣興, 李熙章 등이 인물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전원 무과 급제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우후, 중군, 목사 등 정3품 당하관으로 승서된 인물도 12명이다. 이들은 부임 전 부사, 현감, 군수 등을 지내다가 안흥첨사를 거쳐 승서되었다. 안흥첨사를 역임하고 동계인 부사와 첨사로 옮겨간 이들도 있다. 총 1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갑산부사, 무산부사, 영종첨사, 백령첨사, 해산첨사 등 변지 수령과 변지 첨사였다. 이들과 달리 직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군수나 현감 등 지방수령으로 나갔다.

<표 6> 조선시대 안흥첨사의 파직 사유

구분	조운호송	군향곡관리	안흥항굴항	이양선경탐	부세행정	금송작별	산성보수	대변선개조	기사환국	미상	합계
효종										1	1
현종										1	1
숙종		1							1	2	4
경종		1									1
영조	2		2	1	1	1				5	12
정조	2	1					1	1			5
순조	1	3									4
헌종	2										2
철종	3	1		1							5
고종					1						1
합계	10	7	2	2	2	1	1	1	1	9	36

상당수의 안흥첨사는 재임 중 파직되었다. 그 인원은 36명으로 전체 첨사의 27.6%를 차지한다. 최소 4명 중 1명 이상은 파직되어 교체된 셈이다.

<표 6>은 왕대별 파직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시대순으로 보면 영조대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재위기간이 긴 탓도 있겠지만,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조운문제가 심했던 시기였던 결과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정조와 철종대로 각각 5명이고, 숙종과 순조대는 각각 4명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효종~종종대까지는 파직자가 적었지만, 영조~순조대 이르러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안홍첨사가 파직된 주요 원인은 조운선 호송과 군항곡 관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왕조는 ‘量入爲出’의 재정이념 아래 전세, 공물, 신공, 잡세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토대로 관료의 급료를 비롯하여 왕실과 각사의 운영비, 군사, 외교부문에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세곡운송은 국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업무였고, 조운의 성공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육과 정약용이 조운에 대하여 ‘國事之最重者’<sup>71)</sup>, ‘國之大政’<sup>72)</sup>이라 표현한 것은 이러한 연유였다. 정부는 국초부터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정부는 선박이 지나가는 각 군현의 嶼草 주위에 긴 나무를 세워 ‘某官 某嶼草’라고 크게 글씨를 쓰도록 하고, 해로를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도록 명문화하였고,<sup>73)</sup> 첨사나 만호 등을 보내 호송토록 하였다. 조운선을 안전하게 이끌고 오는 압령차사원의 경우 논상의 대상이 되었지만, 호송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은 수령, 첨사, 만호는 파출의 대상이 되었다. 충청수영 우후와 안홍첨사는 각각 원산도와 안홍량에서 조운선을 점검했는데, 정조대 행영이 설치된 시기에는 안홍진에서만 조운선 점검이 이루어졌다.<sup>74)</sup>

71) 金堉(1580~1658), 『潛谷遺稿』 卷6, 「疏劄」, 論泰安漕路節.

72) 丁若鏞(1762~1836), 『與猶堂全書』 1集, 「詩文集」 卷9, 策問, 漕運策.

73) 『大典續錄』, 「戶典」, 漕轉.

74) 『大典通編』, 「戶典」, 漕轉.

안흥첨사가 막중한 조운 호송과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조운 호송이 쉽지 않았다. 1667년(현종 8) 충청도 면천 유학 李滂의 상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이 살피건대 안흥진의 古名은 難行梁인데, 선박이 운항하기 어려운 탓에 美名을 빌려 고친 것이 이것입니다. 白華山의 一脈이 가로질러 돌출되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서해로 들어가 있고, 큰 바다에 가서야 그칩니다. 가파른 거대 암석이 삐죽하게 그 아래 서 있습니다. 하늘로 솟은 뾰족한 돌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고, 水勢가 쓸어버리듯 흐르니 배가 돌에 치여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왕래하는 선박 중 뒤집혀 침몰하는 것이 10척 중 7~8척에 이르고, 호남 조운도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는데 멀고 무거운 짐을 실은 선박이라 더욱 많이 침몰합니다. 1년에 침몰하는 것이 적어도 20척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바람을 만나 치패가 많으면 혹 40~50척에 이르기도 합니다.<sup>75)</sup>

안흥량의 본래 지명은 ‘難行梁’이었으나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염원하는 목적에서 ‘安興’으로 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흥량은 선박의 왕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 이표의 상소가 비록 과장되었을지는 모르나 한해 이곳에서 침몰하는 선박만 20척 이상에 달했다. 이 선박이 모두 세곡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선박이 이곳에서 난파되었고, 안흥첨사의 교체는 잦을 수밖에 없었다. 정조 스스로도 ‘안흥첨사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전적으로 세곡선을 호송하는 것에서 비롯된 일이다’<sup>76)</sup>라고 평가할 만큼 조운선의 호송 임무는 쉬운

75) 『승정원일기』 201책, 현종 8년 윤 4월 9일, ‘臣謹按安興鎮 古名難行梁 而以其行船之難 假借美名 改今名者 是也 華山一脈 奔突而西入于西海 而外洋勒止之 巉巖巨石 櫛立其下 天塿石劍 環繞四面 水勢蕩瀾 船石舂撞 故往來行船之覆敗者 十常七八 而湖南漕運 亦必過此 則致遠負重之船 尤爲多敗 一年致敗 少不下二十餘隻 值風多敗 則或至四五十隻’.

76)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2월 7일.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안흥침사 중 조운선 호송 문제로 10명이 파직되었다. 이로 인해 정조대 이후로는 조운선 침몰 원인의 경중에 따라 과실이 적으면 파직하지 않고, 충청감영에서 곤장을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군향곡 관리 미비로 파직된 침사도 있다. 안흥진에 군향곡이 비축된 시기는 안흥진성이 축조된 이듬해인 1654년(효종 5)이었다. 안흥진성의 축조 목적이 보장처인 강화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곳에도 초기 1만석이라는 군향곡이 비축되었고, 안흥침사는 管餉使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후 숙종대 남한산성의 군향곡이 이전되어 2만 2천석으로 총량이 늘었으나 충청수영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약 1만석을 이전해주면서 다시 줄어들었다.<sup>77)</sup> 하지만 점차 군향곡 총량이 늘어나면서 19세기 초반에는 약 2만 3천석으로 증가하였다.<sup>78)</sup> 군향곡은 장기간 보관하면 부패하므로 매년 改色해야 했는데, 그 대상 지역은 충청도 37개 고을이었다. 군향곡은 진휼재원으로도 활용되었으나, 안흥진성의 재정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보니 안흥침사가 ‘私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고, 안흥진성에서 먼 군현에 산재해 있는 군현에서는 흉년이라는 이유로 군향곡을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 이를 무마하고자 虛簿를 작성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러한 군향곡 관리 미비 문제는 비단 안흥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군향곡을 비롯한 환곡 관리에 쇄신을 기하고자 법조문을 만들었다.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지 못한 자로서 성적이 꼴찌인 자는 營門에서 杖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추고하며,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라거나 ‘虛錄하거나 反作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조문이

77) 탁태운, 2011, 앞의 논문, 18~22쪽.

78) 『萬機要覽』, 「財用篇」 6, 還摠, 公忠道.

그것이다.<sup>79)</sup> 이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관향사였던 안흥첨사의 상당수는 법전의 규정대로 영문에서 곤장을 맞거나 파직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안흥항의 방축공사, 이양선 보고 대처 미비, 군포 징수 및 산정보수 등의 이유로 파직된 첨사도 있었다.

파직보다 重罰에 해당하는 유배과 충군의 사례도 있었다. 金元璋, 朴弘錦, 李埈 등이 그들이다. 金元璋은 1687년(숙종 13) 안흥첨사에 부임했으나 1689년(숙종 15) 남인이 정권을 잡자 경신환국 이후 남인을 모함한 金煥의 숙부라는 이유로 정배되었다. 김환은 金錫胄, 金益勳 등의 사주를 받아 남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許璽, 許瑛, 李德周 등을 처형, 閔黯, 權大運의 핵심인사를 파직 또는 유배시키는데 일조한 인물이다.<sup>80)</sup> 기사환국으로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지면서 김환은 처형되었고, 김원위는 정배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김원위는 유배를 가기도 전에 의금부 관원에게 장살되었다.<sup>81)</sup>

효종대 박홍금과 이저는 충군형에 처해졌다. 박홍구는 어사의 서계로 인해 홍주목사 洪璜, 소근포첨사 趙鉉와 함께 삭탈관직된 후 공주로 충군되었고, 이저는 충청수사가 안면도 거주민을 내쫓고 목재를 벌목하는 실상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충군되었다.<sup>82)</sup> 이저의 행위는 지금의 공익제보이지만, 당시에는 上官告訐罪로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 직첩을 환수 받았고, 이후 상주영장, 만포첨사, 부산첨사 등을 지냈다.

이들과 달리 17세 초반 이래 안흥첨사를 지낸 인물 중 치적을 남긴 인물도 있었다. 1828년 부임한 李羲午, 1831년의 李羲冀, 1853년의 賈行健, 1889년의 朴東鎭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두

79) 『大典通編』, 「戶典」, 倉庫.

80) 이상식, 2005,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8~79쪽.

81)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6월 10일(병오).

82) 『승정원일기』 135책, 효종 6년 6월 25일; 『승정원일기』 136책, 효종 6년 7월 14일.

명은 『승정원일기』에서<sup>83)</sup>, 후자의 두 명은 현재 남아있는 선정비<sup>84)</sup>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19세기의 인물이지만, 그들은 다른 침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평균 20개월 15일]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각각의 인물의 치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업적이 있다. 바로 ‘賑政’ 즉, 기민 구제였다. 이희오는 ‘진구함에 넉넉히 하였고, 죽과 밥, 술과 고기를 스스로 마련하여 별도로 공궤하였고[賑救之優厚 粥羹酒肉之自備別饋]’, 이희명은 ‘기민을 구휼함에 넉넉하게 했으며[賑饑之從厚]’, 박동진은 ‘매번 흉년을 당할 때마다 두루 빈민을 살피며 구휼하였다[每值歉荒 周窮恤貧]’이라 하여 이들이 안홍산성에서 진휼정책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행건은 ‘3년을 있으면서 백성을 덕으로써 사랑하고, 백성을 의로써 교화[愛民以德 教民以義]한 까닭에 이임할 때 진민들이 비석을 세워 그의 공덕을 기리었다.

요컨대 조선시대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사의 품계는 종3품이다. 그러나 안홍침사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정3품 당상관의 무관이 제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안홍침사가 이력침사직이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안홍침사로 부임해 온 인물들은 평균 약 17개월을 재임하면서 조운호송, 안홍산성 군향곡 관리, 이양선 정탐, 부세 행정, 소나무 관리, 산성 보수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가 다양했던 만큼 많은 침사들이 파직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한편으로 원활한 진휼행정으로 선정을 베풀 침사도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안홍침사는 군사지휘관으

83) 『승정원일기』 2248책, 순조 29년 12월 7일; 『승정원일기』 2291책, 순조 33년 6월 15일.

84) 태안군 관내에는 태안읍성과 안홍진성 서문 앞 육모정에 비석군이 형성되어 있다. 태안읍성에는 주로 영의정, 충청감사 및 태안부사(검방어사)가 있고, 육모정에는 가행건과 박동진의 선정비 3기가 세워져 있다. 태안군의 비석에 대해서는 박춘석, 1999, 『태안의 석조문화』, 태안문화원 참조.

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지방통치의 일선에서 서 있었다.

#### 4. 맺음말

태안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안흥량은 고대 이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조선시대는 안흥량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조선초기부터 이곳에 안행량만호를 설치하고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다. 안흥량에는 1609년(광해군 1) 수군첨절제사진이 설치되었고, 이후 일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어영, 행영 등이 설치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이는 조선정부의 핵심 보장처인 강화도의 방어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내부적으로는 충청수영과 태안군의 군사 및 행정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안흥첨사진은 방어영으로 약 30년, 충청수영의 행영으로 11년 존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후기 내내 첨사진으로서 서해 해양방어, 조운선 호송, 군항곡 관리 등 수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기간 동안 안흥첨사의 지위와 위상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안흥첨사는 정3품 당상 무관이 올 정도로 격이 높았던 자리였으나 정조대 중앙군문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무신을 대우하기 위해 구군과로 잠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군과가 전환된 이후 부임해 오던 안흥첨사들은 품계와 위상이 낮아서 안흥진 및 속읍 수령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순조 초반 兵使와 水使 승진의 지름길인 이력과로 바뀌면서 그 위상이 다시 격상되었다.

조선후기 안흥첨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0개월이었으나, 실제 부

임한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7개월이었다. 무과급제자 기준으로 볼 때 약 50대 후반에 안홍첨사로 부임하였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부호군으로 잠시 있다가 다시 경관직과 외관직 등 여러 방면으로 관직생활을 이어나갔다. 경관직으로는 오위장, 겸사복장, 어영청기사장 등으로, 외관직으로는 목사, 군수나 첨사 등으로 제수되었다. 그 중 상직인 수사로 승진한 사람도 일부 있었고, 반대로 군수와 현감 등 관직이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전체 안홍첨사의 약 28%는 파직, 정배, 충군 등 불명예를 안았다. 그 중 사료에서 확인되는 파직자는 무려 36명에 달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조운선 관리 및 호송 불찰, 군향곡 관리 미비 등으로 파직되었다. 그 외에도 안홍향 굴항 실패, 이양선 보고 대처 미흡, 과도한 부세 징수 및 산성 보수 문제 등도 그들이 파직된 이유였다.

이들과 달리 안홍첨사 재직시 선정을 베풀어 이름을 남긴 첨사들도 있었다. 이희오, 이희명, 가행건, 박동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세기에 재직한 이들은 여타 첨사보다 장기간 안홍진에 근무하면서 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들은 진휼정책에 주력하여 기민과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는 안홍첨사가 일반 수령과 같은 지방통치의 일선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조선후기 안홍첨사의 위상과 재임실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한계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안홍첨사의 구체적인 지방통치 실상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홍첨사의 출신과 관력에 대한 부분이 피상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212 | 軍史 第120號(2021. 9.)

(원고투고일 : 2021. 6. 22,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총청수영, 지방통치, 안흥진, 안흥첨사, 무관인사

<부표> 역대 안홍첩사 명단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여부
1	허수 (許售)		1595(?)					
2	유흠 (柳洽)							
3	장후완 (蔣後琬)						무과	
4	이은종 (李殷宗)		1615(?)				무과	
5	오신남 (吳信男)		1616.1				무과	
6	남응민 (南應敏)	인조 2	1624					
7	이준 (李浚)	인조 7	1629.7					
8	박정건 (朴挺健)	인조 14	1636.7				무과	
9	황효원 (黃孝元)	인조 16	1638(?)					
10	박진립 (朴振立)							
11	노유민 (盧惟敏)							
12	박정민 (朴廷敏)	인조 26	1648.12					
13	박홍금 (朴弘錦)	효종 2						충군
14	양정지 (梁廷祉)	효종 3	1652.7	9				파직
15	이지 (李埏)	효종 4	1653.5	24	풍천부사		무과	충군
16	이지원 (李枝遠)	효종 6	1655.7	16	안동관관	숙천부사	무과	
17	유탄연 (柳坦然)	효종 7	1756.12	28	감산부사	파주목사		
18	이정옥 (李廷沃)	효종 10	1659.4	7	진도군수	내금장		
19	유정 (柳攄)	현종 즉위	1659.12	30	여산영장	훈련도정		
20	백홍성 (白弘性)	현종 3	1662.6		금군장	오위장		
21	정시심 (鄭時諶)	현종 8	1667.7	4	창성부사			
22	성만달 (成晩達)	현종 8	1667.12	16	오위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제직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여부
23	이립신 (李立身)	현종 10	1669.4	20	안변부사	통영우후	무과	
24	홍유량 (洪有量)	현종 12	1671.3	22	나주영장	오위장	무과	
25	김부영 (金阜榮)	현종 13	1672.1	20	칠원현감	안동영장	무과	
26	이화악 (李華岳)	현종 15	1674.4	14	김해부사			파직
27	한근 (韓根)	숙종 1	1675.7	16	태천현감	갑산부사	무과	
28	이립신 (李立身)	숙종 3	1677.12	24	용천부사	충청수사	무과	
29	이송로 (李松老)	숙종 5	1679.1	28	우림장	위도첨사	무과	
30	조시형 (趙時亨)	숙종 7	1681.6	7	박천군수		무과	정배
31	유성위 (柳星緯)	숙종 8	1682.2	24	우림장		무과	
32	한근 (韓根)	숙종 10	1684.3	2	구성부사	전라좌수사	무과	
33	한추 (韓樞)	숙종 10	1684.6	12	훈련도감파총	충청수사	무과	
34	한협 (韓浹)	숙종 11	1685.7	10	남병우후			
35	김원휘 (金元瑋)	숙종 13	1687.12	15	소강첨사			파직
36	신견 (申鍵)	숙종 15	1689. 4	25	경주영장	전라우수사	무과	
37	박선흥 (朴宣興)	숙종 18	1691.8	28	선천부사	전라좌수사	무과	
38	서문진 (徐文縉)	숙종 20	1694.1	7	오위장	영종첨사	무과	
39	이행성 (李行成)	숙종 20	1694.9	28	내금장	봉산군수	무과	
40	박선흥 (朴宣興)	숙종 23	1697.2	27	전라좌수사		무과	
41	홍하창 (洪夏昌)	숙종 25	1699.6	26	백령첨사		무과	파직
42	안근 (安根)	숙종 27	1701.9	26	경산현령	금위영천총		
43	최진한 (崔鎭漢)	숙종 29	1703.12	31	장단부사			파직
44	조유춘 (趙囿春)	숙종 32	1706.8	3	내금장	백령첨사	무과	
45	신명윤 (申命尹)	숙종 32	1706.12	30	전주영장	나주영장	무과	
46	이언연 (李彦瑞)	숙종 35	1709.7	23	내금장			
47	신명인 (申命仁)	숙종 37	1711.7	34	무산부사	경주영장	무과	
48	유문수 (柳文燾)	숙종 40	1714.6	25	철산부사			파직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49	이영 (李泳)	숙종 42	1716.8	12	우림장			
50	한주 (韓樞)	숙종 43	1717.7	5	춘천부사		무과	
51	이명하 (李鳴夏)	숙종 44	1718.1	11	상주영장	하동부사	무과	
52	정문빈 (鄭文彬)	경종 1	1721.1	5	충주영장	부호군		
53	최세규 (崔世珪)	경종 1	1721.7	29	오위장		무과	파직
54	김구령 (金九齡)	경종 4	1724.1	28	진도군수	공주영장		
55	이여택 (李汝澤)	영조 2	1726.6	10	철산부사			
56	서행진 (徐行進)	영조 3	1727.5	32	자산부사	내금장	무과	
57	양희익 (楊憲益)	영조 4	1728.2	23	평안감영중군	무산부사		
58	이선 (李讓)	영조 6	1730.2	12	겸사복장			파직
59	김전 (金殿)	영조 7	1731.3	11	우림장		무과	파직
60	이선 (李讓)	영조 8	1732.3	28	안홍첩사			파직
61	남익엽 (南益燁)	영조 12	1736.8	15	해미현감			
62	허봉 (許逢)	영조 13	1737.12	10	해미현감			
63	유봉장 (柳鵬章)	영조 14	1738.11	5	오위장		무과	파직
64	조원석 (趙元錫)	영조 15	1739.5	27	우림장			파직
65	홍우평 (洪禹平)	영조 17	1741.9	23	내금장	내금장	무과	
66	최태구 (崔台耆)	영조 19	1743.9	25	금위영천총			
67	이희하 (李喜夏)	영조 21	1745.11	15	우림장		무과	
68	김중만 (金重萬)	영조 23	1747.3	25	칠곡부사		무과	
69	윤종대 (尹宗大)	영조 25	1749.5	22	금군장	겸사복장	무과	
70	윤봉정 (尹鳳廷)	영조 27	1751.4	29	내금장			
71	이현승 (李顯升)	영조 29	1753.10	5	우림장		무과	
72	안상오 (安相五)	영조 30	1754.8	19	성진부사		무과	
73	이백령 (李栢齡)	영조 32	1756.4	9	백령첩사	겸사복장	무과	
74	이의복 (李宜復)	영조 33	1757.2	15	내금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75	안윤문 (安允文)	영조 34	1758.6	12	오위장			파직
76	김영수 (金永綬)	영조 35	1759.7	1	죽산부사		무과	파직
77	이희집 (李喜集)	영조 35	1759.9	6	성진첨사			파직
78	전명좌 (全命佐)	영조 36	1760.4	12	풍천부사		무과	파직
79	이석유 (李碩儒)	영조 37	1761.5	18	죽산부사	길주목사		
80	유휘철 (柳彙喆)	영조 38	1762.12	29	대홍산성중군	용천부사		
81	유춘암 (柳春菴)	영조 41	1765.6	17	숙천부사	충익위장		
82	신익문 (申翊文)	영조 43	1767.12	15	충장위장	혜산첨사		
83	유언지 (俞彦摯)	영조 45	1769.4	12	홍주목사		무과	파직
84	구세인 (具世仁)	영조 46	1770.5	25	내금장	태안군수	무과	
85	김한엽 (金漢燁)	영조 48	1772.7	5	우림장	충사장		
86	서필수 (徐必修)	영조 49	1773.1	12	풍덕부사			파직
87	박성환 (朴聖煥)	영조 50	1774.4	2	능주목사			파직
88	조경진 (趙慶進)	영조 50	1774.7	10	고창현감	오위장		
89	서택선 (徐宅善)	정조 즉위	1776.6	19	충익위장			
90	윤면구 (尹勉矩)	정조 2	1778.2	13	남양부사	오위장		
91	이언풍 (李彦豐)	정조 14	1790.12	4	강구권관			파직
92	여종주 (呂從周)	정조 15	1791.5	7	검칙장교		무과	파직
93	신덕룡 (申德龍)	정조 16	1792.1	16	장용영기패관			파직
94	왕한좌 (王漢佐)	정조 17	1793.6	25	어영청행수 교련관			
95	이운상 (李運祥)	정조 19	1795.8	27	훈련도감초관		무과	파직
96	조화 (趙畹)	정조 21	1797.12	5	오위장			
97	피성린 (皮聖麟)	정조 22	1798.6	5	가덕첨사			파직
98	이한두 (李漢斗)	정조 22	1798.12	22	발포만호			
99	장중현 (張忠顯)	순조 즉위	1800.11	28	노량별장			
100	김치오 (金致五)	순조 3	1803.4	7	충사장	오위장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여부
101	정호남 (丁好南)	순조 4	1804.12	29	우림장			
102	조명집 (曹命集)	순조 7	1807.4	15	어영청천총			파직
103	한근형 (韓根馨)	순조 8	1808.6	15	성진첨사	순천영장		
104	이종로 (李宗魯)	순조 9	1809.12	19	충장위장			
105	조운상 (趙雲祥)	순조 11	1811.8	28	내금장	천총		
106	이익현 (李翼鉉)	순조 14	1814.1	6	수원중군			파직
107	이방영 (李邦榮)	순조 14	1814.8	3	충위장	화령전수문장	무과	
108	심우상 (沈禹相)	순조 14	1814.12	40	경상중군			
109	유형원 (兪迴源)	순조 18	1818.5	19	오위장			
110	손응호 (孫應虎)	순조 20	1820.1	19	충익위장		무과	
111	홍장환 (洪章煥)	순조 21	1821.9	15	겸사복장	겸사복장	무과	
112	이득수 (李得秀)	순조 23	1823.1	7	어영청천총			파직
113	김이만 (金履萬)	순조 23	1823.9	26	오위장		무과	파직
114	윤응렬 (尹膺烈)	순조 25	1825.12	28	우림장		무과	
115	이희오 (李羲午)	순조 28	1828.5	21	오위장		무과	
116	김리협 (金履協)	순조 30	1830.3	16	총융청천총	겸사복장		
117	이희명 (李羲冥)	순조 31	1831.7	18	오위장		무과	
118	임이송 (林以松)	순조 33	1833.12	28	오위장		무과	
119	허윤 (許潤)	헌종 2	1836.5	24	오위장	충익위장		
120	성재소 (成載韶)	헌종 4	1838.6	23	충익위장		무과	
121	위종민 (魏鍾敏)	헌종 6	1840.6	19	찰방	충장위장		
122	이병권 (李秉權)	헌종 7	1841.6	7				
123	윤득엽 (尹得燁)	헌종 8	1842.2	12	죽산부사			
124	조진달 (趙鎭達)	헌종 9	1843.3	26	어영청기사장			파직
125	이희장 (李熙章)	헌종 11	1845.6	16	어영청천총	전라우수사	무과	
126	이종응 (李鍾應)	헌종 12	1846.11	18	가덕첨사			파직

순번	이름	왕력	제수연월	재직 기간	전력	후력	출사	파직 여부
127	서전보 (徐典輔)	현종 14	1848.6	17	충익위장	남병영우후		
128	이초영 (李初永)	철종 즉위	1849.12	11	오위장	남병영우후	무과	
129	유의상 (柳宜祥)	철종 1	1850.12	29	오위장		무과	
130	가행건 (賈行健)	철종 4	1853.6	25	오위장			파직
131	유정렬 (劉正烈)	철종 5	1854.12	8				
132	민택호 (閔宅鎬)	철종 6	1855.8	6	오위장			파직
133	김순근 (金順根)	철종 7	1856.3	8	총융청천총			파직
134	이제 (李暲)	철종 7	1856.12	13	오위장	북병영우후		
135	이재찬 (李載瓚)	철종 9	1858.2	2				
136	가중영 (賈中永)	철종 9	1858.5	28	어영정기사장			
137	이유행 (李儒行)	철종 11	1860.10	4			무과	
138	임상현 (林象鉉)	철종 12	1861.3	3	장단부사		음무	파직
139	이희완 (李熙完)	철종 12	1861.7	11	금위영천총	영종첨사	음무	
140	이문영 (李文永)	철종 13	1862.7	12	선전관		음무	파직
141	유상진 (柳相旌)	철종 14	1863.8	22		천총	음무	
142	정제봉 (鄭濟鳳)	고종 2	1865.7	13	금위영기사장	해미현감		
143	백경석 (白景錫)	고종 4	1867.4	39				
144	이흥주 (李興周)	고종 5	1870.7	?				
145	박형빈 (朴馨彬)	고종 22	1885.1	28		친군별영기사장		
146	최현룡 (崔顯龍)	고종 23	1886.1	16				
147	이인성 (李寅聲)	고종 24	1887.6	16	오위장	전라중군		
148	김병수 (金炳洙)	고종 25	1888.11	2	창녕현감	통어영기사장		파직
149	박동진 (朴東鎭)	고종 26	1889.2	18		통어영기사장		
150	남궁탁 (南宮鐸)	고종 27	1890.9	18		통어영기사장		
151	전순기 (全舜基)	고종 29	1892.7	28				
152	최경국 (崔敬國)	고종 33	1894.7	12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典律通補』, 『兩銓便攷』, 『萬機要覽』,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요』,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연려실기술』, 『신증동국여지승람』, 『潛谷遺稿』, 『與猶堂全書』, 『대동지지』, 『湖西邑誌』, 『가고수영』, 경자일기(규장각 소장 古4254-44), 『牒報選集』, 『공문편안』(규장각 소장 奎18154), 『옥구항보첩』(규장각 소장 奎17868)

### 2. 저서 및 단행본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1998

<http://uci.or.kr/G901:A-0008480577>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http://uci.or.kr/G701:B-00093243943>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노혜경, 2004, 「안정복과 황윤석의 대민정책 비교-목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http://uci.or.kr/G901:A-0002003602>

문광균, 2019,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http://uci.or.kr/G701:B-00101012751>

박 범, 2018,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춘석, 1999, 『태안의 석조문화』, 태안문화원

- 송기중, 2019,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http://uci.or.kr/I410-ECN-0111-2021-000-001498036>
-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 이남석·서정석, 1995, 『安興鎭城』, 공주대학교박물관
- 이상식, 2005,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 이준희, 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일지사
- 이호경 외, 2014, 『泰安 安興鎭城-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이훈상, 1990, 『朝鮮後期の 郷吏』, 일조각
- 이희권, 1999,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 장병인, 1978, 「朝鮮初期의 觀察使」, 『한국사론』 4

### 3. 일반논문

- 구완희, 1991, 「朝鮮後期の 收取行政과 守令의 ‘要譽’ :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복원사림』 14  
<http://uci.or.kr/G901:A-0000858562>
- \_\_\_\_\_, 1992, 「조선후기 軍役釐整의 方向과 守令」, 『조선사연구』 1
- 권기중, 2013,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호서사학회』 67  
<http://uci.or.kr/G704-001545.2013..67.006>
- \_\_\_\_\_, 2014, 「조선후기 수령의 지방재정 운영과公私관념-경상도 암행어사 서계를 중심으로-」, 『사림』 48  
<http://uci.or.kr/UCI : G704-001587.2014..48.006>
- 김경숙, 2013,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http://uci.or.kr/10.21027/manusc.2013.43..006>

- 김경옥, 2008,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 『역사학연구』 32  
<http://uci.or.kr/G704-001257.2008..32.008>
- 김선경, 2010, 「조선의 목민학 전통과 牧民心書」, 『조선시대사학보』 52  
<http://uci.or.kr/G704-000303.2010..52.007>
- 김양수·김양식, 2004, 「조선후기 충청감사와 청주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 125  
<http://uci.or.kr/G704-000361.2004..125.001>
- 김용흠, 2010, 「18세기 “牧民書”와 지방통치-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5  
<http://uci.or.kr/G704-SER000002074.2010..35.002>
-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營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 78
- 노혜경, 2005,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木川縣 鄉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6  
<http://uci.or.kr/G704-000717.2005.26..001>
- 문광균, 2016, 「순암 안정복의 잡역 운영론과 그 실제-충청도 목천현감 재임 시기(1776~1779)를 중심으로-」, 『성호학보』 18
- \_\_\_\_\_,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令 趙祉命의 시책」, 『한국사연구』 184  
<https://doi.org/10.31791/JKH.2019.03.184.243>
- 문용식, 1999,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9
- 박 범, 2020, 「17~18세기 안흥진 운영의 제도화 과정과 한계」, 『해양문화재』 13  
<https://doi.org/10.22882/nrimch.2020..13.141>
- 박정민, 2018, 「한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 서정석, 1999, 「泰安 安興鎭城에 대한 一考察」, 『역사와 역사교육』 3·4
- \_\_\_\_\_, 2021, 「안흥진성의 축조 시기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48

- 서태원, 2013, 「조선후기 충청도 安興鎭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학』 51  
<http://uci.or.kr//G704-002032.2013..52.008>
- \_\_\_\_\_, 2013, 「朝鮮後期 忠淸道 安興鎭의 設置와 變遷」, 『역사와 실학』 50
- 송양섭, 2002,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撫營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http://uci.or.kr//G704-000690.2002.13..009>
- 심재우, 1998, 「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운영」, 『규장각』 21
- 심정보, 2020, 「안흥진성의 축조와 이설」, 『문물연구』 38
- 유현재, 2020, 「태안 안흥진성의 교육적 활용」, 『중등교육연구』,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원
- 육군본부, 2012, 「제4장 북벌론과 군사력 강화」,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 이선희, 2009,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 31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09.31..007>
- 이원균, 1984, 「朝鮮時代의 水使와 僉使의 交遞實態」, 『부산수산대학교논문집』 33
- 임용한, 2007,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안성·죽산·과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http://uci.or.kr//G704-000690.2007..26.005>
- 정해은, 2001, 「조선후기 선천(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 조원래, 1985, 「18世紀初 順天府의 地方行政動態; 府使 黃翼再의 改善行政事例」, 『남도문화연구』 1
- 진호신, 2019, 「태안 안흥량(安興梁)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https://doi.org/10.22882/nrimch.2019..12.203>
- 차문섭, 1990, 「朝鮮後期 兵馬防禦營 設置考」, 『국사관논총』 17
- 탁태운, 2011, 「朝鮮後期 安興鎭의 設置와 軍餉 運用」,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Chungcheong-do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on, Kwang-kyun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special army officer of Anheung, one of naval commanders in Chungcheong-do to examine one aspect of regional political rule done in military territories. For this, the study examined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s actual conditions of holding office as preliminary work and a case study for the study on Anheungjin Camp's regional political rule.

In this study,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hich was analyzed, was targeted at 140 people who had been appointed since King Hyojong.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s term in office was legally 30 months. But the average period that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ere in office in the reigns of Hyojong of Joseon to Gojong of Korea was about 17 months.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ho were termed out of office continued public offic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apital and local officials. About 40% of the total number of officers except the people who dismissed from office belonged to Buhogun to wait for personnel appointments, about 26% was appointed commanders of the senior grade of third rank including commanders of Five Military Commands and commanders of Concurrent Royal Stables. The rate to be promoted to local officials was about 20%. Among them, the rate to be promoted to naval commanders, the high rank of the naval forces was just 6.5% and the case of being promoted to garrison commanders, army inspectors, chiefs of staffs, and county

magistrates was 13%.

On the other hand, 27.8% of the whole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ere disgraced as they dismissed from office, were exiled, or were forced into the army. Among them, the people who dismissed from office found from historical records were 36 people. The majority of them dismissed from office because of careless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of cargo vessels and imperfect management of military food. In addition, the failure of the oyster port of Anheung Port, insufficient reports and management of handover lines, excessive collection of taxation, and matters to repair the mountain fortress led to their dismissal from office. This shows that special army officers of Anheung was conducting Local Magistrates, such as the other regional magistrate.

Keywords : Navy Headquarters of Chungcheong-do, Local rule, Anheungjin, Special army officer of Anheung, Personnel matters of military officers